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플라스틱 외의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3년, 2회 이상 확인받은 경우에는 5년마다 다시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의3 등).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자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33조의2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제조자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제조자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확인하며, 확인을 받은 경우 제조자등이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따라서, ① 제조자등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 ② 환경부장관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③ 제조자등이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 등 절차의 흐름대로 내용을 규정하고, 제조자등이 신청하는 사항과 환경부장관이 확인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부령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입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 있는데,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등은 계속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안 제33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비고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 확인) ① <u>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u>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그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u>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자는</u> 최초로 사용비율 확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① <u>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에 대하여, 제조자 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u>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u>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u>	① 제조자 등이 신청하는 사항과 환경부장관이 확인하는 사항을 하나의 항에 규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② 확인을 받은 제조자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현행법 제33조의2) ③ 개정안 제3항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u>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u>	<u>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u>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후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문구를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